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

제출년월일 : '98.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현행 장학생 자격기준이 종합석차 산정제에 의거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부 예규247호)이 개정되어 「종합석차 산정제」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학생 자격의 변경
  -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정 50% 이상인 자"로 변경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 자치13060-816('98. 5. 26)호 - 별첨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를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정 5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생략)</p> <p>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u>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u> 해당하는 자</p> <p>2. (생략)</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 <u>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50%이상</u> -----</p> <p>2. (현행과 같음)</p>

“뽕은뒤에 후회말고 바로알고 바로찍자”

#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 (0361) 54-2011-2223~7 / 담당 홍 천 식

문서번호 자치 13060~ 816  
 시행일자 1998. 5. 26( 3 )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총무·내무과장

선결	과장	국	지시	권위개정장훈	
접	일자		결	회용개정	취소
수	번호	6649	재·공		
처 리 과	내 무 과		람		
담 당 자	김 복 재				

제목 시군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선사항 통보

1. 감사 16S00~242('98.5.21) " '98 강원도 정기종합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 및 법무 13130~43('98.2.10) "시군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정비방향"과 관련입니다.
2. 현행 시군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96.9.2 교육부 예규247호)」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 산출토록 변경되어 성적증명서 발급은 폐지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시군에서는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예. 과목별 성적이 '수'평정 80%이상인자, 과목평균 석차에 의한 순위 등)하여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더 (01~18)

